

근대일본의 공공시설에서 환자(병자)의 법적처우

일본학술진흥특별연구원

/생존한연구센터 특별연구원

가와바타미키(川端美季) mikikwbt@gmail.com

1. 시작하면서

본 발표에서는 공적기관 단속규칙에서 「환자」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가를 정리하고 공공 공간에서 「환자」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밝힌다. 또한 1980년대 각 도도후현의 승합마차, 인력거, 대중목욕탕의 단속규칙을 검토했다.

2. 승합마차·인력거에 대해서 : 승합마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이며, 인력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발전했다. 1886년경부터 승합마차에 대한 단속규칙이 각 후현마다 생겨나기 시작했다. 1886년에는 大阪府, 1887년에는 岩手県, 三重県, 岡山県 등 「승합마차단속규칙」가 시행되었다. 인력거에 대해서는 1885년에 大阪府에서, 1887년에는 三重県, 岡山県, 1988년에는 千葉県등에서 「영업인력거 단속규칙」이 제정되었다. 대부분의 「승합마차단속규칙」 및 「영업인력거단속규칙」에서는 어떠한 특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을 금지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.

「승합마차단속규칙」

- 6종류의 전염병은 피부병이나 나병 그 외 일반 승객들이 꺼리는 병증상을 가진 사람(大阪1886년, 岩手1887년, 三重1887년, 千葉1887년)
- 미친 사람,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,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,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(大阪1885년, 岩手1887년, 三重1887년, 岡山1887년, 千葉1888년)

「영업인력거단속규칙」

- 6종류 전염병, 피부병, 나병, 환자 및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(大阪1885년, 三重1887년, 富山1887년, 岡山1887년, 千葉1888년)
- 폭행자 및 간호인 없는 백치, 미친 사람(大阪1885년, 富山1887년, 岡山1887년)
- * ()내는 후현의 이름과 제정된 해를 표시함.
- * 6종류의 전염병이란 콜레라, 발진티푸스, 장티푸스, 설사, 천연두, 디프테리아를 말함.



승합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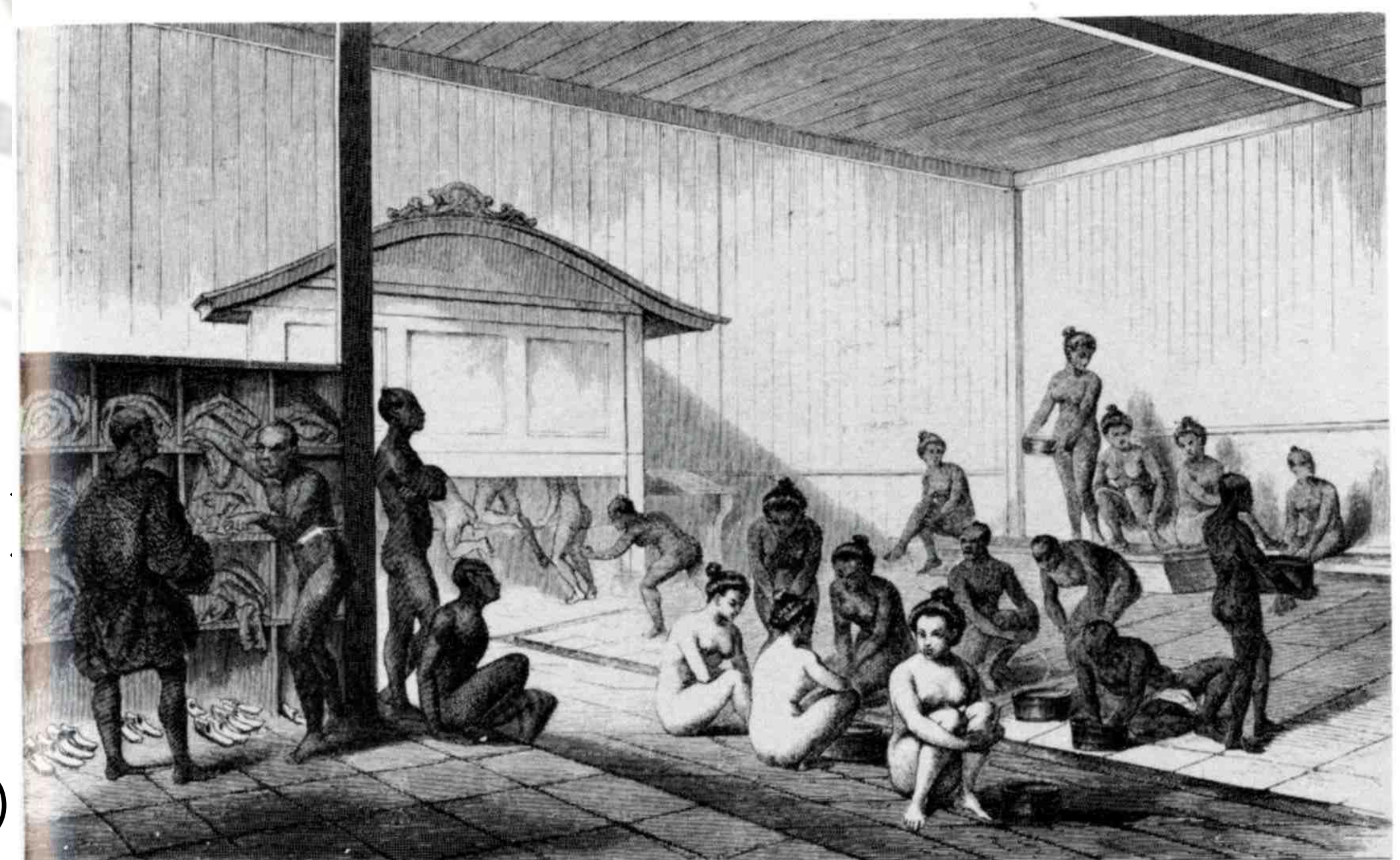


인력거

3. 대중목욕탕에 대해서

대중목욕탕은 메이지 시대 이전부터 일본의 도시부를 중심으로 생겨난 입욕시설이지만, 메이지 이후, 후현마다의 단속규칙에 따라 단속되었다. 1889년에는 동경도에서 최초로 대중목욕탕 단속규칙이 제정되었으며, 각 후현은 「대중목욕탕 단속규칙」이나 「대중목욕탕 영업 단속규칙」을 제정하고 있다. 「대중목욕탕 단속규칙」의 내용은 각 후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. 단속규칙 내용에는 특성의 사람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. 이용을 금지 당한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. .

- 혼자 오는 노인이나 유아 허약자(岩手1883년)
- 간호인 없이 오는 노인과 유아(大阪1885년, 富山1886년, 埼玉1888년)
- 만취자(岩手1883, 山口1887), 만취인(富山1886)
- 사람들이 기피하는 질환환자(매독, 피부병 종류)(京都1886년)
- 기피할 만한 악증환자(山口1887년)
- 만취자들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인정 되었을 때(岡山1886년)
- 나병인 또는 취해서 광기를 부린다고 인정된 사람(三重1887년)
- 백치, 미친 사람(群馬1889년)
- 그 외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병자(大阪1885년, 富山1886년, 埼玉1888년)
- * ()내는 단속규칙을 제정한 각 후현의 이름과 제정한 해를 표시함.



1860년대의 목욕탕의 모습

3. 결론

단속 규칙 이외에도 놀이터나 고용인 숙소 등 단속규칙에서 특성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이용이 금지되었다. 예를 들면 1887년 富山県에서 정한 「놀이터 단속규칙」에는 「백치, 미친 사람, 취객」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며, 같은 해 같은 현의 「고용인숙소 단속규칙」에는 「백치나 미친 사람」의 이용이 금지되었다.

위의 단속 규칙을 살펴보면 이용을 금지 당한 사람들은 5형태로 구분되었다. 1. 전염병자 2. 보호자나 간병인 없는 노인이나 유아 3. 술 취한 불량자 4. 백치이거나 미친 사람 5.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등이다. 승합마차 및 인력거와 목욕탕 단속 규칙과의 큰 차이는 6유형의 전염병 등 급성전염병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목욕탕에 대한 단속규칙에서 기피하는 질환을 가진자, 매독, 피부 질환자 등의 예로 열거 되어 있다. 이러한 것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성전염병자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점이다. 이것은 승합마차 등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동수단이며, 급성전염병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.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은 목욕탕에 관한 단속규칙에만 「그 외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병자」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. 이 사람들은 어떤 병자들인가, 위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가는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자 한다.